**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# 대 검 찰 청

**대변인실**

**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4**

**보 도 자 료**

**2021. 10. 8.(금)**

자료문의 : 선거수사지원과
전화번호 : 02-3480-2330
주책임자 : 선거수사지원과장

**제 목**

## 4·7 재·보궐 선거사범 수사결과

- 당선인 5명 등 총 107명 기소 -

**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**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▣ 2021. 4. 7. 실시된 서울시장·부산시장 등 재·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0. 7.(목)까지 총 339명이 입건되고, 당선인 5명(광역단체장 1명, 기초단체장 1명, 광역의원 3명) 등 107명을 기소

※ 4·7 재·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(2곳), 기초단체장(2곳), 광역의원(8곳), 기초의원(9곳) 등 총 21곳에서 실시

▣ 검찰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하고, 2022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철저 대비 예정

## 1 선거사범 현황

### 가. 입건 및 처리

○ 2021. 4. 7. 재·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1. 10. 7.(목) 24:00 기준, **선거사범 339명이 입건**되고, 그 중 107명을 기소

- **기소된 유형별 선거사범은** △선전시설손괴·폭력행사 등 **폭력선거사범** 32명, △허위사실공표 등 **흑색·불법선전사범** 16명 △**금품선거사범** 9명 △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50명

< 입건 및 처리 현황 > [공소시효 만료일 기준, 단위 명]

| 구 분 | 입건 | 처 리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소 계 | 기 소 | 불기소 |
| 광역단체장 | 274 | 274 | 71 | 203 |
| 기초단체장 | 21 | 21 | 6 | 15 |
| 광역의원 | 39 | 39 | 27 | 12 |
| 기초의원 | 5 | 5 | 3 | 2 |
| 합 계 | 339 | 339 | 107 | 232 |

※ 동일인에 대한 수 건 고발은 접수된 사건 수로 수 명 처리

## 나. 당선인 사건

○ 당선인 중 7명이 입건되어, **5명 기소** <광역단체장 1명, 기초단체장 1명, 광역의원 3명 기소>

- 당선인 4명은 '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'(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), 1명은 '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'(위 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, 제254조 제2항)으로 기소

## 다. 검찰 접수 사건의 수사단서별 현황

○ 검찰 접수 사건 중 **고소·고발 비율이 97.3%**이고,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29명으로 전체 고소·고발의 16.3%를 차지

- 이번 재·보궐 선거에서는 정당 및 제3자(시민단체 등) 고발비율이 높은 편이었고(78.1%), 동일 사안에 중복 고발된 경우가 많았음

< 수사단서별 현황 > [공소시효 만료일 기준, 단위 명]

| 구 분 | 전체 입건 | 검 찰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소 계 | 인 지 | 고 소 | 고 발 | | | |
| | | | | | 선관위 | 후보자 | 정당 | 3자 |
| 광역단체장 | 274 | 155 | 0 | 6 | 13 | 4 | 30 | 102 |
| 기초단체장 | 21 | 4 | 0 | 0 | 2 | 0 | 2 | 0 |
| 광역의원 | 39 | 21 | 4 | 0 | 12 | 0 | 0 | 5 |
| 기초의원 | 5 | 3 | 1 | 0 | 2 | 0 | 0 | 0 |
| 합 계 | 339 | 183 | 5 | 6 | 29 | 4 | 32 | 107 |

### 라. 범죄유형별 현황

○ 흑색·불법선전사범 132명(38.9%), 선거폭력・방해사범 75명(22.1%), 금품선거사범 25명(7.4%) 순으로 많이 발생

< 범죄유형별 입건 및 기소 현황 > [공소시효 만료일 기준, 단위 명(기소인원)]

| 구분 | 흑색·불법선전 | 금품선거 | 선거폭력·방해 | 기타 |
|---|---|---|---|---|
| 광역단체장 | 113(12) | 9(0) | 70(32) | 82(27) |
| 기초단체장 | 10(1) | 7(2) | 0 | 4(3) |
| 광역의원 | 7(3) | 7(5) | 5(0) | 20(19) |
| 기초의원 | 2(0) | 2(2) | 0 | 1(1) |
| 합 계 | 132(16) | 25(9) | 75(32) | 107(50) |

○ 2012. 2. 29. 인터넷,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이어, 2020. 12. 29.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상시적(선거일 제외)으로 전화(직접 통화)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어

**흑색선거범죄 관련 고소(발)는 증가**하고 있으나 '허위성 인식' 등 혐의 입증의 어려움으로 **'허위사실공표' 기소율(12.1%)은 낮은 편임**

※ 특히,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을 통한 후보자 검증 목적의 보도가 자유로워짐에 따라,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·고발 증가 추세

## 2 향후 계획

### 가. 재판 중인 사건을 충실하게 공소유지

○ 원칙적으로 당선인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

### 나. 2022년 대통령선거・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철저히 대비

○ 제20대 대통령선거(3. 9.),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(6. 1.)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선관위・경찰과 상호 협력하여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